

	사무개선위원회 규정		문서번호		5-1-27	
			제정일		2013. 03. 01.	
			개정일			
	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사무행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개선위원회(이하 ‘본 위원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무조직 및 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
2. 직무분석 및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
3. 사무개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
4.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개선방안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학교의 장 및 상기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본 위원회는 교무회의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3명 내지 5명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교무회의의 위원인 당연직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기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5조(회의)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시행)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의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제7조(간사) ① 본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협조요청) 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청취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	사무개선위원회규정	문서번호	5-1-27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사무처

제9조(운영세칙) 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